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생애최초 특별공급**

■ 청약 일정

구분	신청일자	접수장소 및 시간	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생애최초 특별공급	2022.06.14.(화) ~2022.06.15.(수)	• 청약Home 인터넷 09:00 ~ 17:30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(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)

■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84A	84B	84C	합계
생애최초 특별공급	89	44	5	138

■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)

구분	내용
신청 자격 (각 항목 모두 충족)	<b>공통 (필수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애 최초(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</li> <li>•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/ul> </li> <li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 포함</li> <li>-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
	<b>소득우선공급 (70%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통(필수) 자격 요건 충족</li> <li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사람</li> <li>•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기준소득 50%)</li> <li>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초과 ~ 160% 이하 (상위소득 20%)</li> </ul> </li> </ul>
	<b>추첨제 (30%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통(필수) 자격 요건 충족</li> <li>•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% 이하,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%를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3,100만원 이하</li> </ul> </li> <li>※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이 경우 ①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비속이 없거나, ② 방계혈족(형제, 자매 등) 또는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신청 가능('음성 푸르지오 센터파크' 청약 불가)</li> <li>-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전 주택형 신청 가능</li> </ul>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li>-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li>-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li>①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</li> <li>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</li> <li>③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</li> <li>•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</li> <li>- 추첨</li> </ul> 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</li> </ul>

■ 전년도(2021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

공급유형	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	~10,703,651원	~11,293,530원
일반공급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 ~160% 이하	8,071,615원 ~9,934,294원	9,361,053원 ~11,521,294원	9,523,895원 ~11,721,715원	10,113,774원 ~12,447,720원	10,703,652원 ~13,173,725원	11,293,531원 ~13,899,730원
추첨제(30%)	160%이하	~9,934,294원	~11,521,294원	~11,721,715원	~12,447,720원	~13,173,725원	~13,899,730원
	160%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 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  
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,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생애최초 특별공급**

▣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 
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	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[※ 과거 3년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(다음 페이지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)
	○		소득입증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(다음 페이지의 소득증빙 제출서류 참고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"미혼인 자녀"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소득산정시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(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)
		○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○	자산보유 확인서류 (추첨제 신청자)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(다음페이지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)	
부적격 소명자료		○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생애최초 특별공급**

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

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)</li> <li>※ 부동산 미소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"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 없음" 화면 출력</li> <li>- 반드시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전체화면 출력 (비회원 조회 불인정)</li> </ul> </li> </ul>
	○	개별공시지가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	○	토지등기부등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→ 등기부 등본 출력</li> </ul>
	○	시가표준액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</li> <li>- 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
☐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

해당 자격	제출서류	발급처
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 5개년도 소득세납부 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</li> <li>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</li> <li>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세무서</li> <li>② 해당직장</li> <li>③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
☐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 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</li> <li>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</li> <li>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/li> <li>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li>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</li> <li>• 법인등기부등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서</li> <li>• 등기소</li> </ul>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li>•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</li> <li>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센터</li> </ul>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</li> <li>•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사업자 확인각서</li> <li>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※ 1)의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보주택 비치</li> <li>• 국세청 홈택스</li> </ul>	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</li> <li>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청구 서류 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등</li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	